의 안 버호

2037

【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】

# 검 토 보 고

#### 1. 검토경과

- O 제 출 일 자: 2022. 12. 2.(금)
- O 제 출 자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2. 12. 9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2. 12. 20.(화)

#### 2. 제안이유

O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 위임된 사항을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O 예방 지원사업 및 안전보건지킴이 운영(안 제5조 ~ 제6조)
- O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기간운영(안 제7조 ~ 제8조)
- O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등(안 제9조 ~ 제14조)

#### 4. 근거법규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조의2, 제4조의3

#### 5. 검토의견

- O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에 위임된 사항을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하고자 함.
- O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근 거 법 규

### 「 산업안전보건법 」

[시행 2022. 8. 18.] [법률 제18426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5. 18.]

-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5. 18.]